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4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유아숲 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,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,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